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5. 11.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5년 1월 23일, 서천호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2025년 1월 24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4.23.) 상정, 제안설명, 검토
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차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2025.9.29.) 상정, 제안설명, 축조
심사 의결(대안반영폐기)

제3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9.30.) 상정, 소위심사보고,
축조심사, 찬반토론, 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서천호 의원)

현행법은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수협”이라 함)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 인원 요건을 두어 지구별수협의 조합원 수가 100인 미만인 경우를 조합 해산 사유로 정하고, 업종별수협으로 하여금 해당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되 그 수를 15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수산자원 감소 및 어촌 고령화 현상으로 인하여 어업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합원 수 미달에 따른 조합의 강제 해산은 어업환경을 악화시켜 신규 어업인의 유입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수산물가공수협은 조합 해산 사유로 조합원 수 7인 미만을 요건으로 하고 있어 업종별수협과 비교할 경우 형평성 측면에서도 부합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업종별수협 해산 사유 중 조합원 수 요건을 15인 미만에서 7인 미만으로 완화함으로써 조합의 지속적인 발전을 통한 어촌지역 활성화에 기여하려고 하는 것임(안 제108조 후단).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가. 업종별수협의 최소 조합원 수 하향조정 등

1)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업종별수협의 조합 해산 사유 중 하나로 규정되어 있는 조합원 최소 인원을 기존의 ‘15인 미만’에서 ‘10인 미만(김선교의원안 제108조)’ 또는 ‘7인 미만(서천호의원안 제108조)’으로 하향조정하고, 그 밖에 준용규정에 존재하는 일부 오기를 수정하려는 것임(김선교의원안 제108조·제113조).

[현행법 및 개정안의 주요내용 비교1)]

구 분	현 행	개 정 안
최소 조합원 수	<u>15인 미만</u>	(김선교의원안) <u>10인 미만</u> (서천호의원안) <u>7인 미만</u>
준용규정의 오기 수정	제84조에 따른 지구별수협의 최소 조합원 수(<u>100인 미만</u>)를 업종별수협 및 수산물가공수협에 대한 준용규정(제108조, 제113조)에서 <u>200인 미만으로 오기</u>	(김선교의원안) 준용규정인 제108조, 제113조에 <u>인용된 지구별수협의 최소 조합원 수를 실제 근거조문(제84조)에 맞게 수정</u> <u>200인 미만 → 100인 미만</u>

2) 검토의견

(1) 업종별수협의 최소 조합원 수 하향조정

- 현행법은 ‘조합원 수가 15인 미만인 경우’를 업종별수협의 해산 사유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음.

1) 개정안의 신·구조문대비표는 [참고자료1] 참조

그런데 최근 연근해어선 감척 등으로 인해 조합에서 조합원 수가 감소하면서 일부 업종별수협이 조합원 수 미달로 해산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 특히 업종별수협의 경우 지구별수협에 비해 개인 회원이 아닌 법인 회원의 비중이 높아 조합원 수가 많지 않으므로, 조합원 수의 감소로 인한 영향이 큰 측면이 있었음.
- 현재 전국의 업종별수협은 총 19개로, 이 중 조합원 수가 가장 적은 조합은 대형선망수협이며, 해당 수협의 조합원 수는 16인(개인 3인, 법인 13인)임²⁾³⁾.

[수협 유형별 현황(2024년 말 기준)]

(단위: 인)

구분	계	지구별수협	업종별수협	수산물가공수협
조합 수	91	70	19	2
조합원수	150,293	145,838	4,299	156
평균 조합원 수 /1개 조합	1,652	2,083	226	78

자료: 수협중앙회 제출자료 재구성

2) 대형선망수협의 경우 현재 조합원 수가 16명(18개 선단)이며, 이 중 조합원 2명(2개 선단)이 감척을 희망하고 있음.

3) 전체 수협의 조합원 현황은 [참고자료2] 참조

[업종별수협 조합원 수 현황(2024년 말 기준)]

(단위: 인)

연번	조합명	조합구분	조합원 계	개인	법인
1	굴수하식	업종별	1,080	1,074	6
2	서남해수어류양식	업종별	559	550	9
3	제주어류양식	업종별	448	313	135
4	민물장어양식	업종별	379	305	74
5	패류살포양식	업종별	379	379	0
6	멍게수하식	업종별	361	361	0
7	전남서부어류양식	업종별	153	128	25
8	경남정치망	업종별	137	137	0
9	제1,2구잠수기	업종별	129	129	0
10	근해유망	업종별	120	119	1
11	대형기선저인망	업종별	105	103	2
12	제3,4구잠수기	업종별	89	88	1
13	근해안강망	업종별	88	88	0
14	근해통발	업종별	83	82	1
15	동해구기선저인망	업종별	55	55	0
16	서남구기선저인망	업종별	50	49	1
17	전남정치망	업종별	34	34	0
18	멀치권현망	업종별	34	27	7
19	대형선망	업종별	16	3	13

자료: 수협중앙회

□ 이에 개정안은 업종별수협의 해산사유 중 하나인 최소 조합원 수를 기존 15인 미만에서 10인 미만(김선교의원안) 또는 7인 미만(서천호의원안)으로 하향조정하려는 것으로,

업종별수협이 조합원 수 감소로 인해 해산되는 일이 없도록 방지하여 조합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연근해어업의 지속적인 수행과 어업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취지로 이해되며, 필요한 입법으로 보임.

□ 이와 관련하여 해양수산부는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한다는 의견이며,

현재 수산물가공수협의 최소 조합원 수(7인 미만)를 참고하여 업종별수협의 최소 조합원 수도 7인 미만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개정안에 대한 심사 시 함께 검토될 필요가 있겠음.

[수협법상 최소 조합원 수 현황]

구분	지구별수협	업종별수협	가공수협
최소 조합원 수	100인 미만	15인 미만	7인 미만

자료: 해양수산부

(2) 준용규정의 일부 오기 수정

- 현행법은 지구별수협에 대해 규정된 해산사유 등을 업종별수협과 수산물가공수협 등 다른 유형의 수협에 대하여 준용하는 방식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준용규정에 인용된 지구별수협의 최소 조합원 수가 실제 근거규정에 따른 수(100인 미만)와 달리 200인 미만으로 잘못 기재되어 있음.

이는 2017년 지구별수협의 최소 조합원 수를 기존의 200인 미만에서 100인 미만으로 개정하면서 준용규정에 대한 개정은 누락한 입법적 미비에 따른 것으로, 개정안은 이를 실제 조문 내용에 맞게 수정하려는 것이며,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임.

[수협법상 최소 조합원 수 개정 경과]

구분	‘62.1.20 제정	‘70.8.12 일부개정	‘04.12.31 전부개정	‘10.4.12 일부개정	‘17.11.28 일부개정
지구별 수협	20인 미만	200인 미만	200인 미만	200인 미만	100인 미만
업종별 수협	7인 이하	20인 미만	20인 미만	15인 미만	15인 미만
가공 수협	7인 이하	7인 이하	7인 미만		

자료: 해양수산부

□ 다만, 현행법의 체계를 보면 지구별수협에 관하여 규정된 다수의 조문을 업종별수협 및 수산물가공수협에 준용하면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조문이 준용되어 업종별수협 등에 적용되는지 쉽게 알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이는 국민들이 법률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법제의 기본 원칙에 부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향후 조문 정비 등을 추진할 때 검토될 필요가 있어 보임.

4. 대체토론의 요지

없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조경태)

개정안의 내용을 대안에 반영하고, 이 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폐기